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. 12. 3 선고 2024가단131 판결 [건물명도 및 양수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주식회사 D

변 론 종 결 2024. 11. 19.

판 결 선 고 2024. 12. 3.

주 문

1.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[별지1]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C으로부터 위 1.항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,000,000원에서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위 1.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D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차임, 관리비,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[청구의 표시]

○ [별지2] ‘변경한 청구원인’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○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이현복

별지